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February 17, 2020

[2018년 세무조사 현황 및 2020년 방침](#)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지방세 감면 2.3 조원 연장 및 2020.1.1.부터 소급 적용](#)

[2019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8년 세무조사 현황 및 2020년 방침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약 640만명의 0.075% 정도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법인은 그 비율보다 약 8배가 높은 전체 법인세 신고 수 약 77만개의 0.623%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았음.

2018년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은 수입금액별로 차이가 많이 남.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은 약 22.3% (755개 중 169개),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은 약 21.8% (2,913개 중 635개)가 세무조사를 받아 5개 중 1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세청의 대법인에 대한 5년 주기 세무조사 방침과 거의 유사한 결과임. 이러한 세무조사 비율은 수입금액이 약 3백억~1천억원 구간이 되면 절반인 10%대로 떨어지고, 수입금액 50억원 이하는 1% 미만으로 떨어짐. 특히,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은 조사비율이 약 0.05%로 개인사업자 평균보다 낮음.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비율이 약 0.83%로 가장 높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약 0.62%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한편, 국세청은 2020년 1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함. 특히,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삼일회계법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신고지원을 고도화 하겠다고 다짐함.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이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개정된 바와 같이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임.

(신청방법)납세자의 판단 하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함.

(심사대상)기술 및 비용 측면을 심사함.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미 세액공제를 신청한 부분은 제외됨.

(제출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내용)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임.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됨.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지방세 감면 2.3 조원 연장 및 2020.1.1.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5일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되어 왔었음.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하였고, 20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됨. 법이 시행되어 2020년 1월 1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하여 환급 받을 수 있게 됨.

2019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는 2.10(월) 2019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마감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4.7조원이며, 이월 2.6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1조원 흑자를 기록하였음.

'19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 4,543억원으로, 전년(293조 5,704억원)대비 1,161억원(0.0%) 감소함. 재정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자산시장 안정, 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됨. (* 국세수입 실적 및 전년대비 증가율(조원) : ('16)242.6<11.3%> ('17)265.4<9.4%> ('18)293.6<10.6%> ('19)293.5<△0.0%>) 제도적 요인은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방 추가 이양(3.5조원), EITC·CTC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소(3.8조원) 등을 포함함. 경기적 요인은 부동산·주식시장 안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감소, 수입액 감소에 따라 관세 감소 등이 있음.

주요 세목별 증감 분석 (전년실적대비)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 +1.2조원)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은 증가요인, 다만 '19년.1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폭 제약

근로소득세 : +0.5조원)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CTC 확대(2.5조원)로 소폭 증가.

부가가치세 : +0.8조원) 명목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

종합부동산세 : +0.8조원)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5.24%

종합소득세 : △0.7조원) EITC·CTC 확대(1.3조원)로 소폭 감소함. 양도소득세 : △1.9조원)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 주택매매량(만호) : ('18년) 85.6 → ('19년) 80.5 <△6.0%>.

증권거래세 : △1.8 조원)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 증권거래대금(조원) ('18 년) 2,801 → ('19 년) 2,288 <△18.3%>. 관세 : △0.9 조원) 수입액 감소* 등 * 수입액(억불) : ('18 년) 5,352 → ('19 년) 5,032 <△6.0%>

최신 세무예규판례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산업단지의 본점 건물과 같은 필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 관련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 2018 지 2277, 2019. 9. 11.)

이번 심판례는 연구소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서울시 유권해석(서울세제-8071, 2018. 6. 20.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 지 175, 2018. 6. 1. 등)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해제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으로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과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면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대법 2016 두 59188, 2020. 1. 30.)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독일 공모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사건의 원고는 투자펀드를 설정 및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서 원고가 설정한 공모펀드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는 공모펀드를 대신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공모펀드의 자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공모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공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함. (*대법 2016 두 35212, 2019. 12. 24.*)

이번 판결은 독일 공모펀드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및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중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중형
709-8195
Jonghyung.lee@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비영리기업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